

# 녹색인증 도입방안

정부는 9.30(수)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녹색인증은 7.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 녹색인증 도입방안 확정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09.8.25일 발표)】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그동안 금융권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

부 차원에서 녹색기술·프로젝트를 명확히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26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인증대상을 검토하고, 기업 및 금융회사 등 녹색인증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금융권에서 녹색범위 요청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09.2월), 녹색기술('09.5월), 신성장동력('09.5월)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여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하였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

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고시(안) 예시】

대분류	전략품목	핵심요소기술	인증기준
태양광	태양전지	실린계 가스	- SiCl <sub>4</sub> , SiHCl <sub>3</sub> , SiH <sub>4</sub> 순도 6N 이상
	제조용 소재 및 원료	폴리 실리콘	- FBR, Simens 7N 이상
		실리콘 잉곳	- 단결정 직경 160mm 이상, MLT 10 $\mu$ s 이상 - 다결정 잉곳 700Kg 이상, MLT 3 $\mu$ s 이상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으로,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녹색인증은 범부처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써,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청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제가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할 것으

로 기대된다.

#### 일반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

네덜란드 Green Fund Scheme의 경우 소비자, 은행, 기업, 정부 모두가 녹색투자가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일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 대상, 기준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녹색인증 도입방안의 배경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며, 녹색 분야 대상 기술·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유인코자 녹색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한 것이다.

추진경과로, 녹색인증 도입 및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했다. 녹색금융 세제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세제지원한다.

#### 녹색산업에 민간투자 활성화

녹색인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총괄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했다. 총 11회 실무회의 진행되었다.

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참여(260여명)하여 인증대상 검토·도출되었다. 산업분야 109명(7.20~21일), 에너지분야 100명(7.20~21일), 환경분야 7명(8.19일), 국토해양분야 22명(8.19일), 13명(9.9일), 농림수산

식품분야 10명(8.20일) 등이다. 기업 및 금융회사 등 녹색인증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했다. 업종별 단체의 기술고시(안) 검토 및 기업현황 조사, 금융권 회의 등이다.

인증체계를 보면, 녹색인증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로 선정, 고시하는 녹색기술이다.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의 유망 녹색기술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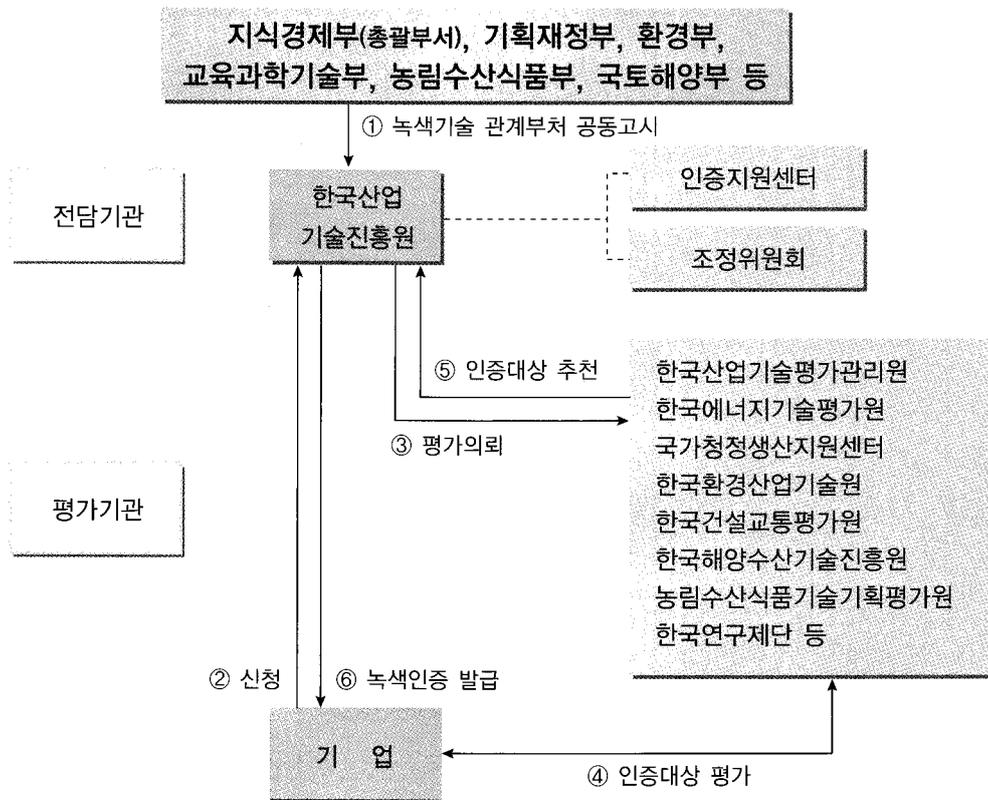
녹색사업 (프로젝트)이다.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이다.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의 30%이상인 기업이다.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의 매출 30% 이상**

운영방안으로, 운영 체계에서 전담기관과 인증평가기관을 구분한다. 전담기관은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평가기관은 기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녹색인증 운영체계】



녹색기술인증(10대)	그린에너지(15대)	녹색기술중점육성(27대)	신성장동력(17대)	
			세부품목	부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전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해상풍력 IGCC 청정연료	태양광(실리콘계, 비실리콘계) 수소제조 및 저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폐기물자원화·에너지화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폐기물·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CCS 원자력	CO2 포집/저장 원자력(개량형경수로,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CCS 원전플랜트	탄소 저감 에너지
첨단수자원	히트펌프	수처리 수자원확보	스마트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고도물 처리 산업
그린IT	LED(조명) 전력IT	조명용LED·그린IT 전력IT 적용가상현실	Eco LED LED 스마트 모듈 LED 감성/웰빙 조명 지능형 그린자동차 Digital 선박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LED 응용 IT융합 시스템 콘텐츠·SW
그린차량	그린카	고효율저공해차량	그린카 WISE SHIP 첨단철도	그린 수송 시스템
첨단그린주택·도시	에너지절약형건물	도시재생 지능형교통물류 저에너지건축	u-City ITS GIS 저에너지친환경주택	첨단 그린 도시
신소재	초전도	친환경소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신소재나노
청정생산		그린프로세스	청정생산용 로봇	로봇 응용
친환경농식품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	기능성식품 친환경 안심식품	교부가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적응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인증의 혜택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 용이성이 제고된다. 인증된 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민간자금 확보 간접 지원('09.8.25일, 2009년 세제개편안)한다.

소관 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인증 기술·프로젝트 사업화 기업에 대한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인증혜택 자금조달 용이**

인증서 발급은 접수·평가기간이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단, 이의신청 또는 추가자료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한다. 신기술인증의 경우 신청기간 연3회, 평가기간 4개월 이내이다.

발급명칭은 소관부처 장관이다. 소관기술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하되 융합 분야 기술 등 불명확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인증·확인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신청 가능하다.

인증·확인 유효기간 내 고시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확인은 유효기간까지 인증·확인 효력이 존속된다. 인증서 활용에서 금융기관은 인증서를 기초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투융자 결정한다.

**인증수수료 저렴**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고 기업 확인은 무료이다. 유사 인증 수수료(만원)는 신기술 인증(산업 70, 보건 81, 환경 200), GS인증(S/W) 500~1500, KS마크 120~240, 부품소재전

문기업 확인 무료이다.

녹색기술 인증에서 인증대상은 10대 분야, 59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전략품목 및 핵심 요소기술 선정이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인증대상 10대분야 59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 규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산업의 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여 기술(제품) 범위를 매년 갱신한다.

인증기준은 인증평가기관이 녹색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한다. 조정위원회에서 녹색기술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녹색기술인증 평가기준(안)】**

항목	배점	평가내용
기술성	40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지식재산권 확보/회피),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예의 효과, 기술수준 향상 등)
시장성	30	· 신청기술의 경쟁 제품대비 비교우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 시장규모, 성장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수익률), 수입대체 효과
녹색성	30	·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녹색프로젝트의 인증에서 인증대상은 9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 사업의 녹색성 중점 평가

사업의 경제성은 금융권에서 별도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고 인증한다.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프로젝트 타당성을 공동기준으로 인증평가기관에서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환경훼손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환경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에서는 녹색전문기업 확인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의 실질적 투자대상이 기업인 바, 녹색기술 인증과 연계한 녹색전문기업 확인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녹색사업의 경

【녹색사업 인증평가 기준(안)】

녹색기술 활용성 (30)	환경 기대효과 (50)	사업 타당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된 녹색기술활용 여부</li> <li>· 사업기여도 (총투자액 대비 비중)</li> <li>·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 영향 분석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li> </ul> </li> <li>- 부정적 영향 분석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li> </ul> </li> <li>- 종합판단 : ‘A≥B’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li> <li>- 엔지니어링/기술적 오류 검토</li> <li>- 정책목표 부합성 (사업 유형별 세부 기준을 통해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판정)</li> </ul>

우 기업 확인의 필요성 낮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확인기준은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비중이 총 매출의 30%이상인 기업이다.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다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

